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81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8. 12.
4. 회부일자 : 2020. 8. 21.

II.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1998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물품 가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라 제작품 가격 정의를 명확히 함

2. 불용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업무 처리순서를 반영하여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로 조 제 목을 변경하고, 단순 오기(誤記)인 ‘기관’을 ‘기간’으로 수정

3. 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상위 법령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조항 정비

4.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비품출납’을 ‘비소모품출납’으로 하고, 실무와 다르게 규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제2항을 삭제함

5.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반영

6. 물품 분류기준 구체화 및 비소모품 취득단가 상향(안 별표 1)

- 취득단가를 종전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

7. 물품 정리 구분 명확화(안 별표 2)

- 용어 정의를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함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외)

-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 일본어 투 표현과 한자어 등 순화 대상 용어인 “내지”, “당해”, “~에 있어”, “요하는”, “의거, 의하여”를 각각 “~부터 ~까지”, “해당”, “~하는 경우”, “필요한”, “따라”로 순화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7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2.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별첨 1-1, 별첨 1-2

나. 입법예고(2020. 7. 13. ~ 7. 30.)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다.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별첨 4)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별첨 5)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13호로 제출되어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관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관리 방안을 신설하고,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물품 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함과 동시에, 물품 품종의 구분기준 및 분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용어의 순화 및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관련 사항

- 동 조례안 제35조는 물품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재물 관리는 물품 보유대장과 물품을 대조하여 물품정보를 통합자산관리시스템에 별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수작업을 통한 재물조사방식은 재고 관리의 어려움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에 시행령을 개정¹⁾하여 전자태그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많은 학교수와 차세대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전자태그 적용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도입이 늦춰져 왔습니다.
-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물품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동 조항의 신설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의 물품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교육청은 물품관리 담당자에게 상위법률의 규정사항을 인지시키고 교육지원청 및 일선학교로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1호, 2013. 6. 21, 일부개정]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하여금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전자태그 추진 계획²⁾

연도	서울시교육청	지역청	직속기관	학교
2019		1 (중부교육지원청 시범운영)		
2020		3 (강서양천, 강남서초, 성동광진)		
2021		7		562교(초등)
2022	1		8	452교 (유,중,고,특수 등)

[그림]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 시스템 프로세스³⁾



2) 물품 품종구분기준 관련 사항

- 동 조례안 [별표1]은 물품의 비소모품 기준을 원칙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1년 미만인 물품의 경우라도

2) '2020년 전자태그(RFID)기반 물품관리 추진 계획(안)', 교육재정과-5666(2020.3.9.)

3)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 2020.8.25 방문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이었던 것을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으며,

소모품⁴⁾에 대해서는 종전의 10만원 이하 물품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기 쉽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비소모품에 대한 단가 기준의 상향은 종전 비소모품의 취득 단가가 10만원이었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⁵⁾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 등 경제 환경의 변동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4)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행정안전부(2018.7), 5쪽

1) 소모품 의미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5)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2016.7	2018.7
비소모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러한 단가 기준의 상향이 현재 서울시교육청 물품 관리(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수량 및 금액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비소모품 중 10만원 이하로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예외적으로 소모품으로 구분·관리하였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단가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소모품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 등에서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 낭비적 요소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액 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칙 또는 세부지침을 통한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사항

- 그 밖에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바꾸는 것인바, 입법의 체계적합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